

'19. 2. 12(화)	화재예방과장 이윤근 7440 /010-9178-5335
홍보여부	x

차장 신명우,
국장 김봉아
운영지원과장 김현숙

청장	결재
3/12	2019. 02. 12
소방청장	

조사보조인력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 인정 검토보고

□ 검토배경

-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보조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이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*
 - * 국민신문고, 마이크로페이지(화재안전특별조사 전용 홈페이지)

□ 관련법령 및 쟁점

- (관련법령)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^{*}은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
 - * 「시행규칙 별표2」 임용분야는 소방·구급·건축·전기·가스 등 11개 분야임.
- (쟁점) ‘건축·전기·가스’ 자격증을 소지한 조사보조인력이 소방관서에서 수행한 조사보조업무가 ‘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경력’에 포함 여부

□ ‘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’에 조사보조 경력 포함 여부 : 포함

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보조업무의 범위

- 조사일정 확인·조정, 건축물 현황 파악 등의 공통업무 수행 및 조사반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·가스·전기분야에서 안전점검 보조업무 수행(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7조)

-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‘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경력’만 언급하고 있으며 주된 종사자인지 종된 종사자인지는 구분하고 있지 않음
-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소방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(2018.5.9.)을 통해 조사보조인력의 점검보조경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구하는 경력으로 인정

⇒ 조사보조인력으로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안전점검을 보조한 경력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요구하는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

□ 향후 계획

- 조사보조 경력인정 관련 시·도본부 및 중앙소방학교 지침 시달(운영지원과 추진)
-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(화재예방과 추진)

참고1

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법령

□ 소방공무원법

제6조(신규채용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험"이라 한다)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□ 소방공무원임용령

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)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.

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

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"경력경쟁채용시험등"이라 한다)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
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[별표 2]

[별표 2]

경력경쟁채용등응시자격구분표(제23조제1항 관련)

임용 예정 분야	응 시 자 격
소 방 분 야	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 ·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기사 ·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분야)
구 급 분 야	응급구조사(1급 · 2급), 간호사, 의사
화 학 분 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 · 기능장 · 기사 · 산업기사 · 기능사
기 계 분 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 · 기능장 · 기사 · 산업기사 · 기능사

건축 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전기·전자 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전기·전자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정보통신 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안전관리 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(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)
소방정·항공 분야	1급 ~ 6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, 소형선박조정사, 잠수기능사, 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정비사
자동차 정비 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자동차 운전 분야	제1종 대형운전면허, 제1종 특수면허 ※ 소방사·지방소방사에 한한다

비고: 채용계급

- 의사: 소방령·지방소방령 이하
- 기술사, 기능장, 1급 ~ 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, 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정비사: 소방경·지방소방경 이하
- 기사, 5급 ~ 6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, 소방시설관리사: 소방장·지방소방장 이하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: 소방교·지방소방교 이하

참고2

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자격 등

1.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

채용분야 (기간제 근로자)	채용 예정인원	담당업무	근무지
계	1,061명		
경력직	전기	29명	근무 희망지역 (시·도단위)
	가스, 소방 (통합채용)	73명	
조사 인력 (보조)	소방 건축 전기 가스	892명	근무 희망지역 (시·도단위) ※ 권역별로 희망 근무지역을 고려·배치
행정	67명	조사결과 자료입력 및 조사관련 행정 업무	근무 희망지역 (시·도단위)

2. 조사보조 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1977. 1. 1. 이후 출생자
- 소방·건축·전기·가스분야 관련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
<관련 국가기술자격>

분야	국가기술자격
소방	◇ 소방기술사 · 소방시설관리사 · 소방설비기사(전기 또는 기계분야) ·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 또는 기계분야),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 등
건축	◇ 건축구조기술사 · 건축기계설비기술사 · 건축시공기술사 · 건축품질시험기술사 · 건축목재시공기능장 · 건축일반시공기능장 · 건축기사 · 건축설비기사 등
전기	◇ 건축전기설비기술사 · 발송배전기술사 · 전기응용기술사 · 전기철도기술사 · 철도신호기술사 · 전기기능장 · 전기기사 · 전기기능사 · 전기공사기사 등
가스	◇ 가스기술사 · 가스기능장 · 가스기사 · 가스산업기사 · 가스기능사 · 화공기사 · 화공기술사 · 화약류제조기사 · 화학류제조산업기사 · 화학분석기능사 등

3. 조사보조 자격증 보유 현황

구 분	자격증 보유	관련학과 출신	자격증 + 관련학과
인원(명)	102	360	430

참고3

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경력인정 여부 회신

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기우는 No.1 HRD 파트너



한국산업인력공단

수신 소방청장(화재예방과장)

(경유)

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경력인정 여부 회신

1. 귀 청의 부공한 발전을 지원합니다.

2. 관련 : 소방청(화재예방과)-2675(2018.05.08.) "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
근로자 경력인정 여부 문의"

3. 위 호와 관련하여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『기술·기능분야
국가기술자격의 융시자격』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의
경력인정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구 분		담당업무	직무분야	경력인정여부	비 고
경력직	전기	• 건축물의 전기, 가스 분야별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	251 안전관리	인정	소방 관련 종목 경력 으로 인정 가능
	가스·소방	• 화재안전조사(보조) 및 조사표 기록·정리 등			
조사 인력 (보조)	소방 건축 전기 가스	• 조사결과 자료입력 및 조사관련 행정 업무	251 안전관리	인정	
	행정		251 안전관리	불인정	

* 정확한 융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를 위하여 경력증명서상 구체적인 업무내용 기재 필요

끝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

전문위원

오장수

차장

김기표

팀장

전결 2018.5.9
이상협

협조자

시행 기술자격운영팀-2559 (2018. 5. 9.)

접수 화재예방과-2782 (2018.05.11.)

주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

/ <http://www.hrdkorea.or.kr>

전화번호 052-714-8672 팩스번호 052-714-8378 / pedoq@hrdkorea.or.kr / 대국민 공개

참고4

「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」 개정 계획

「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」 개정 계획(안)

- ❖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소방 실무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정 추진

① 개정이유

-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에 포함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함

② 주요내용

-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(안 제2조)

③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)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</p> <p>가. ~ 차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· 4. (생 략)</p>	<p>제2조(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카. 시 ·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</u>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추진일정

-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(2월) → 규제 · 법제심사(3월) → 발령 · 시행(4월)